

## 『하나-ONE 해외송금서비스』 이용약관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7. 8. 18

2.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<b>제 5조 (송금한도)</b> 이 서비스의 각 거래 별 송금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</p> <p>2. 연간 송금한도(연간 송금한도는 외국환거래법 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 서비스 이외의 송금 항목별 송금액과 합산되어 관리 됩니다)</p> <p>가.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 제출 송금 : 미화 5만불 상당액</p> <p>나. <u>유학생/해외체재자의 해외체재비 송금 : 미화 10만불 상당액</u></p> <p>다.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송금 : 미화 5만불 상당액</p>	<p><b>제 5조 (송금한도)</b> 이 서비스의 각 거래 별 송금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</p> <p>2. 연간 송금한도(연간 송금한도는 외국환거래법 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 서비스 이외의 송금 항목별 송금액과 합산되어 관리 됩니다)</p> <p>가.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 제출 송금 : 미화 5만불 상당액</p> <p>나. <u>유학생/해외체재자의 해외체재비 송금 : 미화 20만불 상당액</u></p> <p>다.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소득 송금 : 미화 5만불 상당액</p>	<p>-연간송금가능 한도 변경사항 반영</p>
<p><b>제 17조 (약관의 변경)</b> <u>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 거래기본약관 제 13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u></p>	<p><b>제 17조 (약관의 변경)</b> <u>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 거래기본약관 제 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u></p>	<p>-외화예금 거래 기본약관 조항 번호 변경사항 반영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